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59
----------	-------

발의연월일 : 2025. 7. 30.

발 의 자 : 정혜경 · 김준형 · 윤종오
전종덕 · 서미화 · 용혜인
손 술 · 민병덕 · 이재강
한창민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에 일정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한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주말에 근로하는 다수의 근로자의 경우 육아 등 가족의 돌봄이나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의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등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에 포함시켜 임금을 가산하도록 하는 동시에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

금이 아닌 가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일요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부터 제57까지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유급휴일”을 “유급휴일(0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1호의 경우에도 월 1회 이상의 토요일과 일요일의 연속된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특성이나 공중의 필요로 인하여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2. 근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일요일 이외의 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근로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휴일근로”를 “휴일근로(제5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일요일에 근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의 일수는 제56조에 따라 가산된 임금을 통상 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56조”를 “제56조, 제5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 휴가제의 휴가 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u>유급휴일</u> 을 보장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u><신설></u> <u><신설></u>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제55조(휴일) ① ----- ----- <u>유급휴일(0시부터 다음날 0시 까지)</u> ----- . <u>다만,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1호의 경우에도 월 1회 이상의 토요일과 일요일의 연속된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u> <u>1. 사업의 특성이나 공중의 필요로 인하여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정한다.</u> <u>2. 근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일요일 이외의 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u> ② ----- <u>다음 각 호의</u> ----- ----- . ----- ----- -----.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교탄신일(12월 25일)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근로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현행과 같음)

② -----
---휴일근로(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요일에 근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급하여야 한다.	----- ----- -----.
1.·2. (생략) ③ (생략) 제57조(보상 휴가제) (생략) <신설>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보상 휴가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의 일수는 제56조에 따라 가산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① ----- ----- ----- --제56조, 제57조----- -----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